

# 여신약정서

- 외화대출용 -

[\*]

- 차주 -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 은행 -

20 년 [\*]월 [\*\*]일

## 목차

제 1 조 여신 약정.....	- 1 -
제 2 조 선행조건.....	- 2 -
제 3 조 대출금의 인출 및 용도.....	- 2 -
제 4 조 이자지급 및 지연이자.....	- 3 -
제 5 조 상환, 기한전 상환 및 취소.....	- 3 -
제 6 조 진술과 보증.....	- 4 -
제 7 조 약정 및 확약 사항.....	- 5 -
제 8 조 채무불이행 사유.....	- 5 -
제 9 조 채무불이행의 효과.....	- 6 -
제 10 조 과세.....	- 6 -
제 11 조 지원/담보.....	- 6 -
제 12 조 자금세탁방지.....	- 7 -
제 13 조 공개.....	- 7 -
제 14 조 준거법과 관할.....	- 7 -
제 15 조 기타.....	- 7 -

# 여신약정서

본 여신약정서(“**본 약정**”)는 한국에서 적법하게 허가되고 등록 사무소를 서울 중구 명동 11 길 24 (을지로 2 가) 중국건설은행타워에 두고 있는 외국은행 지점인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행**”)과 [●]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이며 등록 사무소를 (XXXXXXX)에 두고 있는 XXXXXXX(“**차주**”)간에 2014년 [●]월 [●]일자로 체결된다.

이에 본 약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합의된다.

## 제1조 여신 약정

본 약정에서 차주에게 제공되는 한도 거래 여신(“**여신**”)은 이하 조건에 따른다.

① 여신한도: [미달러화/중국위안화/●]

“**달러화**” 또는 “**USD**” 표시는 미합중국의 법정통화를 의미한다.

“**중국위안화**” 또는 “**CNY**” 표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통화를 의미한다.

② 자금의 사용 목적: [●]

③ 이자율: (1) 변동금리: [LIBOR + 연[●]% (“**마진**”)]

각 대출의 이자계산기간(“**이자기간**”)별 이자율은 해당 이자기간에 대한 [●]개월 LIBOR 금리에 마진을 더한 비율로 한다. LIBOR 금리는 각 이자기간과 관련하여 해당 이자기간 개시 직전 이자율 결정일에 런던시간 기준 오전 11시경 텔러레이트 스크린 리보 페이지(Telerate Screen LIBOR Page)(또는 기타 그 대체 페이지)에 게시되는, 해당 이자기간의 상당 기간에 대한 달러화 예금에 적용되는 연 이자율을 의미한다. “**대출금**”이란 이 여신약정에 따라 대출하였거나 대출하기로 한 금액 또는 그 대출금의 원금 잔액을 의미한다. 이자율 결정일(“**이자율 결정일**”)이란 각 이자기간의 첫날의 2 영업일 전일을 의미한다. “**영업일**”은 [●]에서 은행이 영업을 위해 개점하며 런던 인터뱅크 시장에서 달러화 예금 거래가 이뤄지는 날을 의미한다.

또는 [(2) 고정금리: 연[●]% (“**이자율**”)]

④ 상환기일: 대출금의 상환기일(“**상환기일**”)은 (i) 해당 대출금을 담보하는 보증신용장(SBLC) 만료일 전 [●]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과 (ii) 해당 대출금의 인출일 이후 [●]개월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각 대출금의 상환기일은 실질적으로 본 약정 별첨 A의 양식으로 된 인출요청서에서 결정된다. “**인출일**”은 본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인출이 이뤄지는 날을 의미한다.

- ⑤ **인출가능기간:** 대출금의 인출가능기간(“인출가능기간”)은 본 약정의 체결일로부터(당일 포함) 시작하여 그로부터 [●]개월이 되는 날(당일 포함)에 종료되는 기간을 말한다. 본 약정의 체결일(“체결일”)은 차주가 본 약정에 명시된 조건을 동봉된 본 약정 부분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승낙하는 날이다.

## 제 2 조 선행조건

본 여신은 은행이 다음 서류들을 은행에게 만족스러운 양식과 내용으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차주에게 제공된다:

- ① 차주가 적법하게 체결한 본 약정서;
- ② 제 11 조(지원/담보)에서 요구되는 모든 담보문서;
- ③ [본 약정의 조건과 본 약정에서 의도된 거래를 승인하는, 차주의 이사회 결의서(적절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필 사본];
- ④ 차주의 설립문서 등본;
- ⑤ 여신과 관련된 문서들(통칭하여 “대출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차주의 이사 등의 인증된 서명감;
- ⑥ 제 3 조 ②항에 따른 인출요청서;
- ⑦ 본 여신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 그러한 승인서류 등의 인증 사본;
- ⑧ [차주가 적법하게 서명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동의서”). 동의서에 의하여 은행은 차주의 특정 재무거래정보를 [동의서 제 4 조]에 명시된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 ⑨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문서;
- ⑩ [각 여신과 필요한 기타 서류].

## 제 3 조 대출금의 인출 및 용도

- ① 대출금의 인출은 제 2 조(선행조건)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허용되며 인출가능기간 중 영업일에 인출된다.
- ② 차주는 예정 인출 일자로부터 적어도 [●] 영업일(또는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더 이른 기간) 전에 실질적으로 본 약정 별첨 A 의 양식으로 된 인출요청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출 요청서가 제출된 날에 제 2 조에 명시된 모든 해당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단 은행이 인출요청서를 수령하면 차주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각 인출시 통화는 보증신용장의 통화와 같은 통화인 [●]로 한다. 각 대출금은 [미달러화/중국위안화] [●] 이상으로 하며 각 대출기간은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이자지급 및 지연이자

- ① 차주는 이자기간 동안 대출금에 발생한 모든 이자를 해당 이자기간에 대한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 ② 이자기간은 [●]개월로 하며, 최초 이자기간은 인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그 이후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말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i)상환기일 직전에 개시되는 최종 이자기간은 상환기일에 종료되며, (ii) 이자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이자기간의 말일은 제 5 조 ②항에 의해 조정된다.
- ③ 각 이자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 결정일에 결정되며 1년을 360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자는 이자기간의 초일부터(해당 일자 포함) 해당 이자기간의 말일(해당 일자 제외)까지 발생한다.
- ④ 차주가 지급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기일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본 약정에 따른 기타 지급을 해당 기일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일자부터 상환이나 지급이 완전하게 이행될 때까지 해당 미지급 금액의 지급 기일 직전 적용되는 이자율에 연 [●]%의 이율을 더하여 산정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

#### 제 5 조 상환, 기한전 상환 및 취소

- ① 차주는 여신약정에 따른 매 인출금을 상환기일 또는 연장된 일자에 동일한 통화로 전액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차주는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늦어도 [●]일 전까지 본건 대출의 상환 연장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은행에게 제공한다.
- ② 지급일이나 산정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해당 지급이나 산정은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뤄진다. 단, 지급과 관련하여 이로 인하여 다음달에 지급액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이 이행된다. 이와 같은 조정은 적절한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본 약정상 지급되는 기타 금액의 산정에 반영된다.
- ③ 차주는 이자 지급기일에 인출금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미달러화/중국위안화]/[●] 이상의 금액으로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기한전 상환일까지 차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기산이자 및 기타 금액과 함께 상환할 수 있다. 단, 차주는 기한전 상환 의사를 기한전 상환 금액과 기한전 상환 예정일을 특정하여 은행에게 [●]일 이상 사전에 서면 통지(취소불가능)하여야 한다. 차주는 은행에게 기한전 상환 수수료로 {상환금액의 기한전 상환액 X [●]% X 기한전 상환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 대출기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한전 상환 시 지급한다. 차주는 은행의 요구가 있을 시 기한전 상환의 결과 은행에게 발생된 손실이나 경비(중단된 자금조달비 등)를 지급한다. 기한전 상환된 대출금 원본은 재차입할 수 없다.

- ④ 본 약정에 따라 은행에게 지급되거나 은행이 회수하는 모든 지급액은 은행에 의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충당된다: (i)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한 수수료, 비용 및 경비의 지급, (ii)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한 지연이자의 지급, (iii)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한 발생이자의 지급, (iv)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금의 상환 [(iv) 제 5 조 ③항에 명시된 원금의 기한전 상환]
- ⑤ 본 약정 또는 본 약정에 의해 예정된 문서에 따라 은행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원금, 이자, 수수료,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해당 지급기일에 통상적인 은행 영업시간 동안 서울에 소재한 은행의 사무실 또는 은행이 차주에 통지하여 지시한 기타 다른 장소에서 지급되거나 또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
- ⑥ 인출가능기간 말일에 여신약정 중 미인출 금액은 자동 취소된다. 취소된 여신약정 금액은 이후 회복될 수 없다.

## 제 6 조 진술과 보증

차주는 체결일에 은행에게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며 여신약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매일 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① 차주는 설립관할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이다;
- ② 대출문서에서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 의무는 적법하고,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의무이다;
- ③ 차주에 의한 대출문서의 체결 및 이행과 대출문서에서 계획한 거래는 (i) 적용되는 법규정, (ii) 차주의 설립문서 또는 (iii) 차주 혹은 차주의 자산을 구속하는 계약이나 증서와 충돌하지 아니하며 향후에도 충돌하지 아니한다;
- ④ 차주는 대출문서와 대출문서에 계획된 거래를 체결, 이행 및 교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인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 ⑤ 차주는 대출문서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은행에게 알려져야 할 차주 및 기타 모든 관련당사자에 관한 중대한 모든 정보(재무정보 등)를 은행에게 공개하였으며 동 정보는 제공되는 날 현재 모든 중대한 점에서 정확하고 어떤 점에서도 왜곡됨이 없다;
- ⑥ 본 약정의 체결일부터 본 약정의 의무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 ⑦ 정확하고 유효한 차주의 설립문서의 최신 사본을 제공하였다;

- ⑧ 차주가 알고 있는 한, 불리하게 결정될 경우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차주를 상대로 개시된 법원, 중재기관이나 기구의/에 의한 소송, 중재 또는 행정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⑨ 대출문서의 체결과 대출문서에 따른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인가, 동의, 승인 또는 라이선스가 취득되거나 발효되어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

## 제 7 조 약정 및 확약 사항

차주는 여신약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약정 및 확약한다:

- ① 각 대출금을 제 1 조 ②항 “자금의 사용목적”에 명시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확약한다;
- ② 각 대출금의 사용시 [●]의 모든 적용 법과 규제요건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 ③ 본 약정의 유효기간 동안 차주는 각 회계연도의 상반기에 대한 미감사필 재무제표 및 각 회계연도의 연례 재무제표(일반적으로 감사 받은 것이어야 함)의 사본을 제공 가능한 때에,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미감사필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후 늦어도 [●]일까지, 감사필 연례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일까지, 그리고 은행이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차주의 재무상태 및 운영에 관한 기타 다른 정보를 은행에게 제공한다. 본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각 재무제표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 ④ 차주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한 통지 또는 시간의 경과에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게 될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타 차주의 운영, 재산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은행에 가능한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 발생 후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8 조 채무불이행 사유

다음과 같은 각 사유의 발생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

- ① 차주가 본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이와 같은 지급 불이행이 [●] 영업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승인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득한 승인 등이 만료, 해지, 취소, 철회, 보류 또는 수정되어 은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차주가 지급불능상태가 되거나 재정적 무능력으로 인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파산, 회사정리절차, 강제적 화의절차 또는 청산이나 차주

채무의 경감이나 재조정을 위한 이와 유사한 절차에 대한 신청이 차주 또는 제 3 자에 의해 접수되는 경우, 또는 차주 채권자(들)이 차주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차주가 자신의 경영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차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④ 차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은행이 차주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⑤ 차주가 은행거래의 일반적인 규칙을 위반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은 점이 확인된 경우;
- ⑥ 차주가 제공한 진술 및 보증이 그 일자 현재 중대한 측면에서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 약정에 따라 제공된 증명서나 의견이 그 일자 현재 중대한 측면에서 허위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⑦ 차주의 사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한 일부가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몰수되거나 매도, 양도 또는 달리 처분된 경우;
- ⑧ 차주가 체결한 다른 약정(서면 및 구두계약 포함)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금 [●]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전 지급의무와 관련된 증빙서류 또는 담보, 보증 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한 통지 또는 시간의 경과에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게 될 사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 ⑨ 차주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벌금이나 위약벌의 판결이나 결정을 선고 받고 [●]일 이내로 그러한 판결 등에 따른 지급, 이행 또는 지급보증서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제 9 조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 8 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본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인출을 즉시 중단하며, 대출금 기타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당시 차주가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기타 다른 모든 금액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차주에 대한 은행의 차주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되며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해 제 4 조 ④항에 따른 지연이자율로 이자가 발생한다.

## 제 10 조 과세

본 약정에 따라 차주가 은행(및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주선인 및/또는 담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현재와 미래의 세금, 관세, 원천징수, 부과금 혹은 기타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법률에 의하여 세금이나 원천징수가 부과될 경우, 차주는 추가자금(총액)을 지급하여 수령 당사자가 세금이나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받았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 제 11 조 지원/담보

차주가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채무는 중국건설은행의 [●] 지점 또는 그 지점이 지정하는 하위 지점이 발행한 하나 또는 다수의 취소불가의 보증신용장(“SBLC”)에 의하여 담보된다. 보증신용장은 최대 보증기간을 [●]개월로 하고, 신청인을 [●]로 제한하여 발행되어야 하며, 은행에게 만족스러운 양식과 내용이어야 한다.

## 제 12 조 자금세탁방지

은행은 여신약정에 따른 지급이 관련 법률(자금세탁방지, 테러방지,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로 판단할 경우, 그 지급을 차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차주는 은행이 이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임을 인정한다. 차주는 지급지시가 관련 법규정 위반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제 13 조 공개

차주는 여신약정이 유지되는 기간 내내 그리고 여신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미상환된 기간 동안, 은행이 [●]에 여신약정에 대한 정보(아래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를 차주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다:

- ① 본 약정 및 본 약정의 수정 및/또는 보완 계약의 사본
- ② 차주가 본 약정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능력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통지 사본

## 제 14 조 준거법과 관할

본 약정과 이의 체결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 그에 따라 해석된다. 또한 차주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기로 하며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제 15 조 기타

- ① 본 약정 및 본 약정에 언급된 문서들은 본 약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본 약정 당사자들의 완전한 의무를 구성하며 본 거래에 관한 이전의 의향이나 이해의 표시를 대체한다. 본 약정은 양측 당사자들이 서명하거나 양측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서명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된다.
- ② 본 약정은 차주, 은행 및 그 각각의 상속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동인들에 의해 집행 가능하며 단, 차주는 본 약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본 약정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적법한 수권 서명인으로 하여금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은행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을 대리하여

---

성명:

직위: (직인)

차주

[차주의 명칭]을 대리하여

---

성명:

직위: (직인)

인출 요청서

일자: 20XX 년 \_\_월 \_\_일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서울 중구 명동 11 길 24(을지로 2가)  
중국건설은행타워

관계자 제위,

XXXXXXXX(“차주”)는 본 통지에 의해 20XX 년 \_\_월 \_\_일자 여신약정서(“여신약정”) 제3조 ②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인출하고자 합니다:

- (1) 인출 예정일: [•];
- (2) 대출금 통화: [•];
- (3) 대출금액: [•];
- (4) 이자기간: [•];
- (5) 대출기간 및 상환기일: [•];
- (6) 계좌번호: [•] 지점에 [•]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

차주는 본 통지에 의해 본 인출요청일 현재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귀사에 확인합니다:

- (1) 채무불이행 사유나 통지서의 발송이나 시간의 경과 또는 둘 다에 의해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2) 본 여신약정에 포함된 진술 및 보증은 본 인출요청일 현재 진실되고 정확하다.
- (3) 여신약정 제2조에 명시된 해당되는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되었다.

본 인출요청서에 사용된 용어는 여신약정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명: \_\_\_\_\_

직인: